

전주지방법원 2022. 9. 14 선고 2021가단71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14.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1,664,034원과 그 중 31,438,223원에 대하여 2019. 12. 9.부터 2021. 7. 8.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9. 7.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와 2019. 7. 2. 접수 제23055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5. 22.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금액을 2,125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4. 19.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C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2) 피고 A이 대출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9. 7. 20.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9. 12. 9. 기업은행에 22,309,435원을, C은행에 9,128,78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19,790원의 추가보증료가 발생하거나 206,021원(242,400원 지출 후 36,379원 회수)의 채권회수비용을 지출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6,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과 확정손해금의 합계액인 31,664,034원(= 22,309,435원 + 9,128,788원 + 19,790원 + 206,021원)과 그 중 31,438,22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7. 8.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